

유엔인권해설집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주(註)

이 책자는 유엔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제12권을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

"유엔의 목적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고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구현하고...

" - 유엔헌장 (서문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

- 세계인권선언 (1조)

1993년 6월 25일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됨(A/CONF. 157/24 (Part 1), chap. III).



유엔인권해설집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ntents

서문	9
부록	24
A. 1991년 3월 4일 현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회원국(128개국)	24
B. 본 협약의 14조 1항에 의거하여 선언한 회원국들	29

|서문|

유엔이 창설된 이후, 회원국들은 각종 국제 선언, 규약, 협약들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수호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완전한 인권의 구현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일부 부문에서의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계통을 이유로 하는 차별, 배척, 억압 및 특혜가 계속해서 분쟁을 야기시키고 악화시키고 있으며, 필살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인종차별은 그 자체로서 크나큰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당한 것이기에, 유엔은 인종차별 철폐를 하나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서, 유엔 일반총회는 1963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점을 지적했다.

인종차별 또는 우열에 관한 모든 학설은 과학적으로 잘못 되었으며, 도덕적으로 규탄 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협스러우며, 이론적 또는 현실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인종차별과 더욱 심하게는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심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정책들은 민족 간의 우호 관계와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의 대상자들뿐 아니라 인종차별을 하는 자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증오와 분열을 초래하는 인종 분리가 없고 인종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가 유엔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1965년 유엔 총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국제법적 구체절차를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일단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에 동의한 것이 된다.

협약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개인들, 인간의 집단들 또는 단체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며, 공공기관과 기구들도 이 같은 지침에 따르도록 만든다.

개인들 또는 집단들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하거나, 옹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 정부 정책들을 검토하고, 인종차별을 촉발하거나 영

속 시키는 법령들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개인, 집단,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금지시키고 종식시킨다.

통합주의적 또는 다인종적 조직과 운동, 그 밖의 인종 간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수단들을 장려하고, 인종적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것을 억제 시킨다.

본 협약은 1969년 27개 회원국들이 비준 또는 가입을 함으로써 발효되었다. 1990년 말 현재, 유엔 회원국의 3/4이 넘는 128개 국이 본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했다. 본 협약은 유엔체계 내에서 가장 유서깊은 그리고 가장 많은 가입국을 보유한 인권협약이다.

본 협약은 회원국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구성과, 책무 및 활동은 본 인권해설집에 기술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부록에는 협약의 전문과 회원국 목록이 제공되어 있다.

개척자적 경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는 회원국들이 특정 인권조약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최초의 기구이다.

유엔총회의 제3 위원회(The Third Committee:사회적, 인도주의적 및 문화적 문제들을 담당)는 이행수단이 없이는 본 협약의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협약 내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설립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이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비견될 만한 조직과 기능을 가진 5개 다른 위원회들도 창설되었다 -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산하),¹⁾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²⁾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³⁾ 아동권리위원회.⁴⁾

절차

본 협약은 인종차별의 퇴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들이 취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들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 절차를 수립했다.

첫째, 협약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들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둘째,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출하는 진정절차

셋째, 인종차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국을 상대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절차. 이러한 진정서 제출은 당사국이 협약의 회원국인 동시에 인종철폐위원회의 진정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990년 말 현재 14개 국가들이 이러한 선언을 했다.⁵⁾

1) 인권해설집 준비 중.
 2) 인권해설집No.4 참조.
 3) 인권해설집 준비 중.
 4) 인권해설집 No.10 참조.
 5) 알제리, 코스타리카,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세네갈, 스웨덴, 우루과이.

본 협약은 그러한 선언을 한 회원국들에게 권리 침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다른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시도한 개인 또는 집단들의 진정을 조사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것을 규정한다. 지정된 기구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인종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1983년 제2차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세계회의에 의해 채택된 행동 계획은 회원국들에게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들이 국내 구제절차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며 인종 차별 희생자들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진정규칙은 간소해야 하며, 진정은 즉시 다루어져야 한다.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차별받은 가난한 희생자들에게는 법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비자치 지역

본 협약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게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유엔신탁통치지역 및 비자치지역 내의 개인과 집단들이 유엔기구들에 제출하는 진정에 대해 의견과 권고를 제시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다른 유엔 기구들이 취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및 그 밖의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과 권고를 제시한다.

위원회 자격

본 협약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명망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18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위원은 본

협약의 회원국들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선거는 2년에 한번 실시되며, 위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역, 문명, 그리고 법 제도를 평등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⁶⁾

자율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자율적인 기구이다. 위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전문적 능력에 따라 선출된다. 위원은 해임될 수 없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교체될 수 없다. 본 협약에 의거하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절차규칙을 정하며, 외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의 비용은, 유엔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부담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에 의해 작성되고 채택된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제네바의 인권센터에 위치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사무국은 유엔의 정규 예산에 의해 비용을 지급 받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출이 발생하는 모든 제안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과 협의를 마친 후에 승인을 한다. 매년 2회 열리게 되어있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는 보통 뉴욕 유엔본부 또는 제네바 유엔사무소

6) 1991년 2월 현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Mahmoud Aboul-Nasr (이집트), Hamzat Ahmadu (나이지리아), Michael Parker Banton (영국), Eduardo Ferrero Costa (페루), Isi Foighel (덴마크), Ivan Garvalov (불가리아), Rdgis de Gouttes (프랑스), George O. Lamptey (가나), Carlos Lechuga Hevia (쿠바), Iouri A. Reshetov (소련), Jorge Rhenan Segura (코스타리카), Shanti Sadiq Ali (인도), Agha Shahi (파키스탄), Michael E. Sherifis (키프로스), Song Shuhua (중국), Kasimir Vidas (유고슬라비아), Riidiger Wolfram (독일연방공화국) and Mario Jorge Yutzis (아르헨티나).

1991년 5월 제네바의 유엔에서 출간

에서 개최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유엔총회에 제출한다. 또,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와 식민국 및 그 국민들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의 이행에 관한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와 협력한다. 또, 세계노동기구 및 유네스코 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활동

회원국들은 4년에 한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년째 되는 해에 간략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당사국 대표가 보고를 하고, 전문가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비평을 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요약과 건의 및 권고 사항들이 기술된다.

1970년부터 1991년 3월 사이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882개 보고서를 접수했으며, 이중 73건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요청했던 것이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서들의 성격과 목적에 관한 각종 오해를 불식시켜야 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더라도, 본 협약의 회원국은 포괄적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보고서들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 다른 그릇된 오해는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발효시킬 의무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본 협약은 현재의 관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모든 회원국들이 협약의 조항들을 국내법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일부 보고서들은 국내 헌법에 본 협약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믿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본 협약은 특정 행위들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는 입법을 요구하며, 교육, 문화, 정보 분야에서의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일부 회원국들은 단순히 국가의 헌법에서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데 그치고, 협약에 의거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보고서들은 입법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행정적 그리고 기타 조치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게을리 했다. 또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조문들을 첨부하지 않았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지침을 회원국들에 제공했으며, 반복적으로 추가 정보를 종종 요청했다. 또, 협약의 특정 조항들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회원국들에게 일반적 권고를 하기도 했다.

국가 간 진정

본 협약의 모든 회원국들은 한 국가가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진정이 다른 국가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그 진정을 접수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본 진정 절차가 당사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본 진정 절차를 이용한 회원국은 아직까지는 없다. 본 진정 절차는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 진정

본 협약의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 절차는 1982년 10개 회원국들이 이 부문에서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함에 따라 발효되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진정을 비밀리에 당사국에 통보하지 만, 진정인의 동의를 없는 한, 진정인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당사국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구제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 문제를 토의하고 건의안과 권고안을 결정한다. 이러한 건의안과 권고안은 진정을 제출한 개인 또는 집단과 당사국 모두에게 전달된다.

신탁통치지역 또는 비자치지역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유엔신탁통치조약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 의해 통치되던 영토들을 포함하는 많은 비자치지역들이 독립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영토가 18개에 달한다. 이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들이 인종차별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유엔총회에 보고서와 권고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의 전반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비자치지역을 관리하는 국가들이 본 협약의 회원국이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비자치지역을 책임진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3개 실무 그룹들이 각각 아프리카 지역, 지브랄타를 포함하는 대서양 및 카리브 지역,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을 담당한다.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비자치지역 내의 인종차별문제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거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주로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와 식민지 및 그 국민들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의 이행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비자치지역의 인종차별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적절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서 중 상당수가 인종차별이 아닌 주로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 부문에서의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여론의 조성

본 협약의 특징은 회원국들이 교육, 문화 및 정보 부문에서 국가 간 그리고 인종 간 및 종족 간 편견을 척결하고, 이해와 관용과 우정을 증진시킬 것을 선언한다는 점이다.

유엔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척결을 위한 세계의 해(1971)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척결을 위한 10개년을 2차례(1973-83 및 1983-93)에 걸쳐 연속으로 선정했다. 1978년과 1983년에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척결에 관한 세계회의가 유엔에 의해 개최되었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유엔이 설립한 기구들 중 가장 널리 승인을 받은 상설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 모든 사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권센터가 주최하는 인종차별에 관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관한 세계회의와 10개 년 행사(Conferences and Decades)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결과를 출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보고서들은 인종차별 선동 및 인종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수단들, 그리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신의 활동들을 검토한다.

효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약에 의거한 의무 이행에 관한 보고서들을 정기적으로 검토 해오고 있는 지난 20년간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국가들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헌법을 수정하여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인종차별을 영속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 법령을 수정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본 협약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다.

인종차별을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했다.

사법, 안보, 정치적 권리, 또는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련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인종차별문제를 담당하고 원주민 집단들의 이익을 보호 할 새로운 기구들을 창설했다.

법률 또는 행정 관행의 개정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협의를 했다.

회원국들이 국제 포럼에서 자국의 인종차별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 법률과 관행을 본 협약의 규정들

에 맞추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상호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 왔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요청들을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한다.

문제점

인종차별을 지속적인 국제적 의제로 유지시키면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직무를 방해하고, 맡은 바 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첫 번째는, 일부 회원국들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할 인권 부문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어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보고서가 감시 임무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인종차별이 지속되고 있고, 갑작스러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이다. 인종철폐위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회원국들이 - 유엔의 정규 예산이 아니라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위원들의 독립성을 지키는 한 수단이라고 생각되었었다. 개별 회원국들이 지원하는 액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들이 분담금 납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로 인한 자금의 부족 현상은 1985년

말까지는 유엔의 정규예산에서 가불하는 방법으로 충당했지만, 그 이후 유엔도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매년 3주간 2차례 열어야 하는 회기를 수차례 단축 또는 취소 시켜야만 했다.

향후 목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본 협약을 만국공통의 협약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도 자체적으로 본 협약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인종차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회원국의 수를 증가 시키는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가까운 장래에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은 4개 부문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인종적 우월감 또는 증오심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을 확산시키는 행위,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인종주의자들의 폭력행위 및 그들에 대한 지원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의 제정과 인종차별을 장려하고 선동하는 조직 또는 활동들의 금지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

인종차별 행위로부터의 보호와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

편견을 없애고, 이해와 관용과 우정을 증진하며, 유엔헌장과 국제 인권협약들을 홍보하는 교육, 문화, 종교 부문의 활동

인종차별방지에 관한 기존의 국내법 모음집이 인권센터에 의해 편찬되고 있으며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인종차별금지법의 모델도 현재 작성 중에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본 협약을 적용하려는 국가들이 이들 문서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부록 |

A. 1991년 3월 4일 현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회원국들(128개국)

회원국	비준서 접수일 또는 가입일	발효일
아프가니스탄	1983년 7월 6일 a	1983년 8월 5일
알제리	1972년 2월 14일	1972년 3월 15일
안티과 바부다	1988년 10월 25일 b	1988년 10월 25일 b
아르헨티나	1968년 10월 2일	1969년 1월 4일
호주	1975년 9월 30일	1975년 10월 30일
오스트리아	1972년 5월 9일	1972년 6월 8일
바하마	1975년 8월 5일 b	1975년 8월 5일 b
바라이나	1990년 3월 27일	1990년 4월 26일
방글라데시	1979년 6월 11일 a	1979년 7월 11일
바베이도스	1972년 11월 8일 a	1972년 12월 8일
벨기에	1975년 8월 7일	1975년 9월 6일
볼리비아	1970년 9월 22일	1970년 10월 22일
보츠와나	1974년 2월 20일 a	1974년 3월 22일
브라질	1968년 3월 27일	1969년 1월 4일

불가리아	1966년 8월 8일	1969년 1월 4일
부르키나 파소	1974년 7월 18일 a	1974년 8월 17일
부룬디	1977년 10월 27일	1977년 11월 26일
벨로루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1969년 4월 8일	1969년 5월 8일
캄보디아	1983년 11월 28일	1983년 12월 28일
카메룬	1971년 6월 24일	1971년 7월 24일
캐나다	1970년 10월 14일	1970년 11월 15일
카페 베르데	1979년 10월 3일 a	1979년 11월 2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971년 3월 16일	1971년 4월 15일
차드	1977년 8월 17일 a	1977년 9월 16일
칠레	1971년 10월 20일	1971년 11월 19일
중국	1981년 12월 29일 a	1982년 1월 28일
콜롬비아	1981년 9월 2일	1981년 10월 2일
콩고	1988년 7월 11일 a	1988년 8월 10일
코스타리카	1967년 1월 16일	1969년 1월 4일
코트디부와르	1973년 1월 4일 a	1973년 2월 3일
쿠바	1972년 2월 15일	1972년 3월 16일
키프러스	1967년 4월 21일	1969년 1월 4일
체코슬로바키아	1966년 12월 29일	1969년 1월 4일
덴마크	1971년 12월 9일	1972년 1월 8일
도미니카 공화국	1983년 5월 25일 a	1983년 6월 24일
에콰도르	1966년 9월 22일 a	1969년 1월 4일
이집트	1967년 5월 1일	1969년 1월 4일
엘살바도르	1979년 11월 30일 a	1979년 12월 30일
이디오피아	1976년 6월 23일 a	1976년 7월 23일
피지	1973년 1월 11일 b	1973년 1월 11일 b
핀란드	1970년 7월 14일	1970년 8월 13일
프랑스	1971년 7월 28일 a	1971년 8월 27일
가봉	1980년 2월 29일	1980년 3월 30일
잠비아	1978년 12월 29일 a	1979년 1월 28일

독일	1969년 5월 16일	1969년 6월 15일	멕시코	1975년 2월 20일	1975년 3월 22일
가나	1966년 9월 8일	1969년 1월 4일	몽골	1969년 8월 6일	1969년 9월 5일
그리스	1970년 6월 18일	1970년 7월 18일	모로코	1970년 12월 18일	1971년 1월 17일
과테말라	1983년 1월 18일	1983년 2월 17일	모잠비크	1983년 4월 18일 a	1983년 5월 18일
기니	1977년 3월 14일	1977년 4월 13일	나미비아	1982년 11월 11일 a	1982년 12월 11일
가이아나	1977년 2월 15일	1977년 3월 17일	네팔	1971년 1월 30일 a	1971년 3월 1일
아이티	1972년 12월 19일	1973년 1월 18일	네덜란드	1971년 12월 10일	1972년 1월 9일
교황청	1969년 5월 1일	1969년 5월 31일	뉴질랜드	1972년 11월 22일	1972년 12월 22일
헝가리	1967년 5월 1일	1969년 1월 4일	니카라과	1978년 2월 15일 a	1978년 3월 7일
아이슬란드	1967년 3월 13일	1969년 1월 4일	니제르	1967년 4월 27일	1969년 1월 4일
인도	1968년 12월 3일	1969년 1월 4일	나이지리아	1967년 10월 16일 a	1969년 1월 4일
이란(이란이슬람공화국)	1968년 8월 29일	1969년 1월 4일	노르웨이	1970년 8월 6일	1970년 9월 5일
이라크	1970년 1월 14일	1970년 2월 13일	파키스탄	1966년 9월 21일	1969년 1월 4일
이스라엘	1979년 1월 3일	1979년 2월 2일	파나마	1967년 8월 16일	1969년 1월 4일
이탈리아	1976년 1월 5일	1976년 2월 4일	파프아 뉴기니	1982년 1월 27일 a	1982년 2월 26일
자메이카	1971년 6월 4일	1971년 7월 4일	페루	1971년 9월 29일	1971년 10월 29일
요르단	1974년 5월 30일 a	1974년 6월 29일	필리핀	1967년 9월 15일	1969년 1월 4일
쿠웨이트	1968년 10월 15일 a	1969년 1월 4일	폴란드	1968년 12월 5일	1969년 1월 4일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1974년 2월 22일 a	1974년 3월 24일	포르투갈	1982년 8월 24일 a	1982년 9월 23일
레바논	1971년 11월 12일 a	1971년 12월 12일	카타르	1976년 7월 22일 a	1976년 8월 21일
레소토	1971년 11월 4일 a	1971년 12월 4일	대한민국	1978년 12월 5일 a	1979년 1월 4일
리베리아	1976년 11월 5일 a	1976년 12월 5일	루마니아	1970년 9월 15일 a	1970년 10월 15일
리비아 아랍 자미히리아 (Libyan Arab Jamahiriya)	1968년 7월 3일 a	1969년 1월 4일	르완다	1975년 4월 16일 a	1975년 5월 16일
룩셈부르크	1978년 5월 1일	1978년 5월 31일	세인트루시아	2월 14일	2월 14일
마다가스카르	1969년 2월 7일	1969년 3월 9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81년 11월 9일 a	1981년 12월 9일
몰디브	1984년 4월 24일 a	1984년 5월 24일	세네갈	1972년 4월 19일 a	1972년 5월 19일
말리	1974년 7월 16일 a	1974년 8월 15일	세이셸	1978년 3월 7일 a	1978년 4월 6일
말타	1971년 5월 27일	1971년 6월 26일	시에라레온	1967년 8월 2일	1969년 1월 4일
모리타니아	1988년 12월 13일	1989년 1월 12일	솔로몬군도	1982년 3월 17일 b	1982년 3월 17일 b
모리셔스	1972년 5월 30일 a	1972년 6월 29일	소말리아	1975년 8월 26일	1975년 9월 25일
			스페인	1968년 9월 13일 a	1969년 1월 4일

스리랑카	1982년 2월 18일 a	1982년 3월 20일
수단	1977년 3월 21일 a	1977년 4월 20일
수리남	1984년 3월 15일 b	1984년 3월 15일 b
스와질랜드	1969년 4월 7일 a	1969년 5월 7일
스웨덴	1971년 12월 6일	1972년 1월 5일
시리아 아랍 공화국	1969년 4월 21일 a	1969년 5월 21일
토고	1972년 9월 1일 a	1972년 10월 1일
통가	1972년 2월 16일 a	1972년 3월 17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1973년 10월 4일	1973년 11월 3일
튀니지	1967년 1월 13일	1969년 1월 4일
우간다	1980년 11월 21일 a	1980년 12월 21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969년 3월 7일	1969년 4월 6일
소련	1969년 2월 4일	1969년 3월 6일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1974년 6월 20일 a	1974년 7월 20일
영국 및 북아일랜드	1969년 3월 7일	1969년 4월 6일
탄자니아 공화국연합	1972년 10월 27일 a	1972년 11월 26일
우루과이	1968년 8월 30일	1969년 1월 4일
베네주엘라	1967년 10월 10일	1969년 1월 4일
베트남	1982년 6월 9일 a	1982년 7월 9일
예멘 c		
유고슬라비아	1967년 10월 2일	1969년 1월 4일
자이레	1976년 4월 21일 a	1976년 5월 21일
잠비아	1972년 2월 4일	1972년 3월 5일

^a 가입일

^b 승계 통지서 접수일

^c 1990년 5월 22일 예멘 인민민주공화국과 예멘아랍공화국이 합병하여, 수도를 사나로 하는 예멘공화국으로 통합되었다. 예멘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1972년 10월 18일 본 조약에 가입하였다. 예멘공화국은 1989년 4월 6일 본 협약에 가입했다.

B. 본 협약의 14조 1항에 의거하여 선언을 한 회원국

회원국	선언서 기탁일	발효일
알제리	1989년 9월 12일	1989년 9월 12일
코스타리카	1974년 1월 8일	1974년 1월 8일
덴마크	1985년 10월 11일	1985년 10월 11일
에콰도르	1977년 3월 18일	1977년 3월 18일
프랑스	1982년 8월 16일	1982년 8월 16일
헝가리	1990년 9월 13일	1990년 9월 13일
아이슬란드	1981년 8월 10일	1981년 8월 10일
이탈리아	1978년 5월 5일	1978년 5월 5일
네덜란드	1971년 12월 10일	1972년 1월 9일
노르웨이	1976년 1월 23일	1976년 1월 23일
페루	1984년 11월 27일	1984년 11월 27일
세네갈	1982년 12월 3일	1982년 12월 3일
스웨덴	1971년 12월 6일	1972년 1월 5일
우루과이	1972년 9월 11일	1972년 9월 11일

인권 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목록

- No. 1 인권기구 (Human rights machinery)
- No. 2 국제인권장전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차개정판)
- No. 3 인권분야의 자문 및 기술적 협력 (Advisory services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차개정판)
- No. 4 고문방지 (Combating torture) (1차개정판)
- No. 5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철폐 투쟁에 대한 제2차 10개년 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 No. 6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2차개정판)
- No. 7 진정 절차 (Complaint Procedures)
- No. 8 인권을 위한 세계 공보 캠페인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for human rights)
- No. 9 원주민의 권리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1차개정판)
- No. 10 아동의 권리 (The Rights of the Child) (1차개정판)
- No. 11 초법적, 약식 및 자의적 처형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1차개정판)
- No.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No. 13 인도주의법과 인권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 No. 14 동시대적 형태의 노예제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 No.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인권이사회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Human Rights Committee)
- No. 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차개정판)
- No. 17 고문방지위원회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 No. 18 소수집단의 권리 (Minority Rights) (1차개정판)
- No. 19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No. 20 인권과 난민 (Human Rights and Refugees)
- No. 21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 No. 22 여성차별: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 No. 23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해로운 전통적 관행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 No. 24 이주노동자의 권리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 No. 25 강제퇴거와 인권 (Forced Evictions and Human Rights)
- No. 26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No. 27 유엔 특별보고관 관련 17가지 FAQ (Sevente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
- No. 28 용병활동이 국민의 자결권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Mercenary Activities on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 No. 29 인권운동가: 인권 옹호활동을 위한 권리의 보호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 to Defend Human Rights)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은 제네바에 주재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작하였다. 동 책자는 활발하게 고려되고 있거나 특별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선별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은 많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 인권이 어떠한 것이고, 유엔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국제적 제도(international machinery)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었다. 내용 변경이 없고, 제네바 주재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재발행 기관이 협의하고 크레딧(credit)을 얻는다는 조건하에 유엔 공식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재발행이 가능하다.

문의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뉴욕사무소(New York Offic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유엔인권해설집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쇄일| 2005년 11월 일
|발행일| 2005년 11월 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02 2125 9660~5
|FAX| 02 2125 9666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02)313-7593(代)

ISBN: 89-90475-72-6 94300 비매품
89-90475-51-1(세트)